

의정연 카드뉴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바로알기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

분류	감염병특성
제1군	물 또는 식품매개 발생
제2군	예방접종 대상
제3군	간헐적 유행하며, 감시하고 대책수립 필요
제4군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입 감염병
제5군	기생충감염병(표본감시)
지정감염병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 필요(표본감시)



개정 후: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른 '급(級)별 분류체계' (2020.1.1.)

분류	심각도·전파력
제1급	<p>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큼</p> <p>↕</p> <p>감염병 유행조사를 통한 관리</p>
제2급	
제3급	
제4급	

법정감염병 구분

구분	전수감시 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제1급 감염병 (16종)	제2급 감염병 (24종)	제3급 감염병 (26종)	제4급 감염병 (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신고	즉시신고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격리	음압격리 등	격리		

* 표본감시 :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기타 감염병 분류

기생충감염병 (7종)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9종)

생물테러감염병 (8종)

성매개감염병 (7종)

인수공통감염병 (10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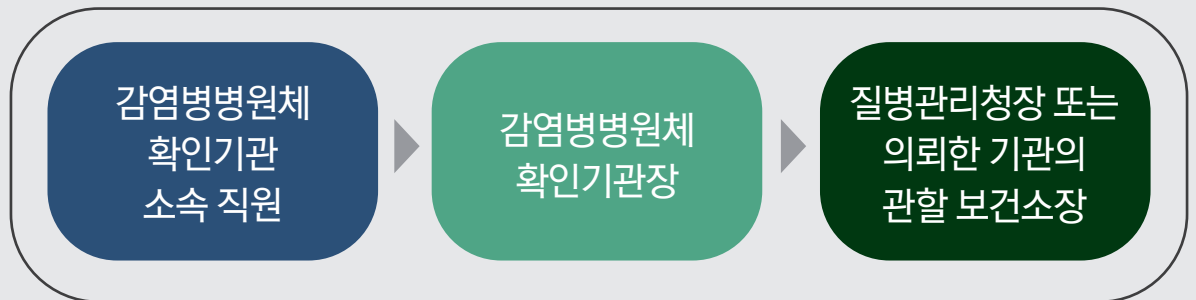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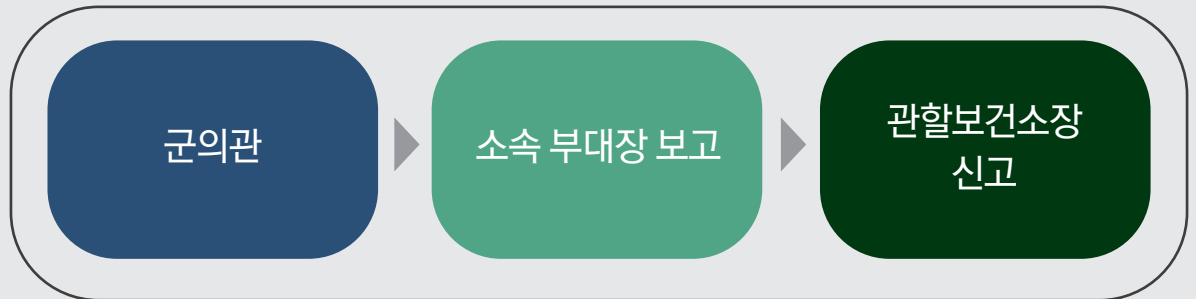
의료관련감염병 (6종)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검역감염병

신고주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신고시기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검사거부자, 병원체 검사결과
제2급,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발생, 사망, 검사거부자, 병원체 검사결과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 발생

신고방법

①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질병관리청장



<http://is.kdca.go.kr>

관할보건소 :
웹 또는 팩스전송



신고서식

②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① 정의

- 질병관리청 전산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 간에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지원
-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자 PC에 설치되어 간편하게 감염병 발생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② 주요기능

- 감염병 발생 신고, 표본감시 감염병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검사의뢰 등 의료기관에서의 신고 및 내역 조회
- 의료정보시스템(EMR, OCS)의 데이터를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달하기 위한 API 기능
- 감염병 환자 발생 알림
- 공지사항, FAQ 내용 조회
- 의료기관에서의 연도별 감염병 신고 건수 통계 조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제1급, 제2급감염병 :

500만원 이하 벌금

제3급, 제4급감염병 :

300만원 이하 벌금